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
----------	-----

제출년월일 : 2017.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변화로 각종 난치성 질병 발병율이 높을 것이라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높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불만감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조례안 제6조의2)

- ①항에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내용 추가
 -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항에 다음 각 호 신설(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관련)
 1. 건강검진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4. 21. ~ 4. 28.)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에 따른 반영계획서 제출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법령 발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07.12.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주민 건강 검진료 : 62,500,000원
500,000원/1인 × 125명(30세 이상) = 62,5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연락처	(033) 330 - 2340